

제438회 국회 (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회의록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10일(월)

장 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2
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2
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2
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2
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2

(10시33분 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10시35분)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률안 소위자료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 434회(임시회) 제4차 소위에서 논의했던 주요 논의 내용을 1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우선 제명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법과 제정안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 제정안과 기본법 간에 중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통합의견에 반영을 했고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의 입법공청회 주요 관련 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쪽·4쪽·5쪽은 의원안별 주요 내용에 대한 대비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정안의 구성체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총칙과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 그다음에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 등 그리고 그다음 쪽에 있는 것처럼 관련된 보칙 사항과 부칙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총칙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의 목적, 2조에서 정의, 기본원칙,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책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관련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 관련해서는 정보의 수집·관리나 기후위험의 평가,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 등에 대해서는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진척도 평가,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그리고 기후보험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보칙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서 지식을 보급하는 사업, 조사·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권한의 위임 등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부칙에는 다른 법과 동일하게 시행일 그리고 타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봐서 다른 법률의 개정 그리고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제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제정안의 제명은 밑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번 4차 소위의 논의 내용이 정리된 것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정법의 목적 규정입니다.

기후위기와 미래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고 기후회복력 및 국민 안전 강화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조항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제정안의 내용을 가급적 모두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밑의 참고, 통합 의견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제1조의 목적을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통합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제정안의 2조가 되겠는데요—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등 제정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 조항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의원안별 비교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밑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4개의 제정안을 모두 통합해서 규정하면서 일부 규정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정안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기본법과의 유기적인 연계,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반 평가 또 기후변화 정책의 일관성 등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의 제정안을 모두 통합해서 통합의견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4개의 제정안에 있는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있는 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개 제

정안을 모두 통합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에 있는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것도 또한 4개 제정안에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표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해서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응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적응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 4차 소위에서 말씀하셨던 기본법과 지금 논의하는 제정안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리한 간략한 표입니다.

17쪽에 있는 표는 기본법에는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원칙 사항을 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은 제정법안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상에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시책과 관련된 게 총 12개 조문이 있습니다. 37조부터 맨 밑에 보시면 47조까지 해서 총 12개 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7개 조문은 전부 제정법안으로, 적응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였고 2개 조문은 일부만 이관하는 것으로 또 3개 조문은 기본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치하는 조문은 표에서 보시는 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44조(녹색국토의 관리), 45조(농림수산의 전환·촉진 등) 이 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의 내용에 따라서 제정법안으로 이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의 위치나 자구, 순서 등의 조정이 필요해서 우선 통합의견으로는 그것을 반영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33쪽부터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장의 신설 및 조문 순서 정리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4개의 제정안이 유사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조문의 순서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정리하면서 장의 구분을 별도로 두어서 1장에 총칙 부분, 2장에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및 기후위험 평가로, 그다음에 3장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4장에는 기후회복력 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5장에는 보칙으로 그리고 6장의 별칙은 제정법안들에는 없는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통합의견에서는 별칙을 신설하는 조항을 35조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5개 조문으로 정리가 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 경과조치 등 해서 1조부터 9조까지 준비를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9쪽부터 있는 내용은 총칙에 해당되는 1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이고 4개 법률안과 통합의견의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말씀드릴 것은 23쪽의 조지연 의원안에 있는 기후정의에 관한 정의 조

항, 그다음에 25쪽에 있는 김소희 의원안에 있는 11호 기후보험에 대한 정의 조항, 그다음에 조지연 의원안 12호에 있는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 조항들은 각각 해당 조문 정의 규정에 사용되는 조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조항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해당 조문에서 직접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2쪽까지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쪽부터는 조금 전에 17쪽 보시면서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법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본법이 맨 왼쪽에 있는 것이고, 3단 비교표 맨 왼쪽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제정안에 대한 통합의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제정안으로 이관을 하거나 전부 이관을 하거나 일부 이관을 하거나 할 때 기본법에 개정하는 내용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를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 34쪽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의 37조에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과 관련된 조항 2항에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밑의 3항에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관리체계나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행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제정안으로 전부 이관을 하면서 기본법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안을 제시하였고 그래서 제정안에는 제7조에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9조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등으로 해서 기존에 37조 2항·3항에 있던 것을 7조와 9조로 개별 조로 분리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서 34쪽에 있는 것처럼 기존 기본법에 있는 4항과 5항은 그 이관되는 내용에 맞추어서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6쪽에 보시면 기존의 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신설하는 내용을 기본법 개정안에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적응법에 따라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이 된다는 근거 규정만을 기본법에 두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본법의 관련 조항들은 36쪽부터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과 43쪽 쪽 해서 모두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법과 제정안의 관계에서 제정안으로 이관할 내용, 그다음에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50조까지 조문대비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기본법에 존치를 하는 것, 그다음에 제정안으로 전부 이관하거나 일부 이관하면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통합의견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와 별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정의견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좀 배포를 해서 관련된 사항 소위자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의견을 별지로 참고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배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1쪽입니다.

제2조 정의조항에 ‘부문’을 ‘분야’로 바꾸고 분야의 분류체계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분야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제2조 정의 규정 중 기후위험과 기후영향 항목에서 나열된 대상들을 간소하게 지칭하기 위해 이전 논의에서 ‘부문’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으나 발전 부문, 수송 부문도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이미 사용 중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문’ 대신 ‘분야’로 용어를 수정한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분야의 분류체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중복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지만 적응법의 각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이를 수정하기에는 기본법을 그대로 저희가 따 왔기 때문에 별도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정법에서는 기본법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별지 1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별지 자료 1쪽 제3조와 관련 기본원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대안은 아닙니다만 법률안 내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적응시책’으로 표기된 사항을 ‘적응대책’으로 수정하려는 통합의견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자료 1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5조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로 수정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초 이소영 위원님께서 소위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들이 의미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어서 관련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자료 제16~18쪽 그다음에 33쪽~50쪽입니다.

여기는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기본법과의 중복성 해소 관련해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후부에서는 기본법에서 적응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원칙만 남기고요. 이행점검이라든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적응법으로 이관하여 통합의견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통합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개념에서, 제1장 총칙 목적에서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원래 탄소중립기본법상에는 기후적응 논의를 할 때 ‘기후위기’로 그냥 통일돼 있었는데 적응법에서는 별도로 ‘기후위기’라는 개념하고 ‘미래기후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썼는데 현재의 위기는 기후위기이고 미래의 위기는 기후위험이 되는 건가요? 두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건가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관과 관련해서, 기후적응과 관련해서 대책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국가물관리대책하고 녹색국토 그다음에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이 세 가지 부분이 매우 중요한 적응대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기본법에서 이관을 하지 않고 적응법에서 빼는 것인지 특히 물관리 같은 경우는 매우 핵심적인 적응대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것은 이관하지 않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3조에 기후보험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담았는데 이것은 민간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적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민간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선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적응법에 굳이 담는 취지가 무엇인지, 특히 이것 개발·운동을 활성화하자, 이걸 위해서 지원대책까지도 담자 했는데 현재의 기후보험 관련해서 민간보험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소한 상황이라는 합시다라는 대체로 보험사 이익 구조 중심으로 돼 있고 집행률도 굉장히 미약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데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이것을 더 개발하고 운동을 활성화하는 쪽으로만 법안에 담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먼저 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박지혜 답변을…… 기후부에 하신 것 같은데요.

○이소영 위원 정부안이 아닌데 기후부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먼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기후위기이고 미래는 기후위험. 당초에는 개정안에는 여러 의견 주신 것,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 이렇게 규정이 됐습시다라는 미래의 예상 가능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후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의 기후위기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목적 조항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라고 했을 때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식량 부족이라든가 해수면 상승,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서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미래에는 또 새로운 기후위기라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체계로, 기후위기 개념으로 다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을 좀 포괄해서 기후위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서왕진 위원 기후위험이 더 포괄적이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서왕진 위원 기본법에 있는 기후위기 개념하고 이번 적응법에 있는 기후위험 개념하

고 차이를 잘, 구별을 못 하겠던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위기는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위험을 초래해서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 위험은 그 상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서 악영향이 발생할 그 가능성까지 정의 조항에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해 요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에 노출된 상태라든지 취약 사항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일단 기후위험은 미래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목적 조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게 정부 발의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통합의견은 상임위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도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후위기 정의하고 여기 통합의견에 있는 기후위험의 정의하고 비교해 보면 기후위기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지금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기후상태 자체를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후위험은 그 기후위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로 보이는데 그 기후위기 상태로 인해서 분야별로 발생하는 어떤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기후위험으로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후위기도 이제 미래에는 더 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거고 기후위험도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가뭄이나 폭염 같은 것은 미래에 발생할 게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시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정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발의자나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발의자로서 제정안 19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언급이 돼 있어서 아마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내용을 잘 통합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리스크랑 크라이시스는 정의부터 다르니까 그 정의부터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우리 대응하고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법률안 제목도 바꿨잖아요, 회복력 강화라고.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법률안 제목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한 만큼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좀 더 담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리스크와 크라이시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크라이시스에 대응하는 것과 앞으로 벌어질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대책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조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그 질문에는 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기후위기는 현재이고 기후위험은 미래인지.

○김소희 위원 원래 크라이시스는 현재를 다루는 거고요. 리스크는 미래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앞에 현재나 미래 그러니까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될 일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현

재를 빼고 미래를 빼면 됩니다. 현재도 크라이시스가 있고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도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해야 되는 두 가지 사항 다 마찬가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사 리스크를 할 때 보통 말 그대로 정의상 크라이시스는 현재 벌어지는 거고 리스크는 미래를 언급하기 때문에 정의를 그대로 옮겨 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미래의 리스크도 되고 크라이시스도 다 된다 하면 ‘현재’, ‘미래’ 이 두 단어를 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조문을 같이 쓰셨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보면 좋겠고 말 그대로 정의상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냐 미래냐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하거든요. 크라이시스는 현재이고 리스크는 미래이고 이런 것도 통상적인 이해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안드리건대 ‘이 법은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리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빼는 거지요. 대신에 ‘예상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지금 4개의 의원안에 다 담겨 있는데 통합의견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기후위험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앞으로 예상되는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거여서 현재 확정된 게 아니라는 취지를 담으신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살려서 ‘이 법은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서왕진 위원 김소희 위원님 설명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미 발생한 위기는 위험이든 또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는 위험이든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위기하고 위험…… 그러니까 영어로 크라이시스,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별되는 듯하지만 우리말로 보면 위험이 더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잘 전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법에 위험이라고 개념 규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것을 굳이 위기와 위험을 구별해서 해 놓으니까 오히려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위기 하나로 통일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위기와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또는 ‘예상 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냥 하나로 하는 게 더 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고, 저는 아예 위기와 위험을 구별하지 않고 위기로 그냥 통일하되 ‘이미 발생한 것과 발생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하든—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는’ 이렇게 표현만 해서 그냥 기후위기 하나로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소희 위원 웬지 계속 정의에 천착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크라이시스는 이미 터진 일이고요, 리스크는 아직 터지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도……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상 가능한 리스크도 있지만 저희가 예상 못 하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상품도 가입을 하는 거고. 안 터지면 더 좋은 건데 터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퍼센티지가 0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는 게 리스크고요. 크라이시스는 그냥 지금 터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좀 뒤서 우리는 양쪽 다 하겠다, 다 열심히 해 보겠다, 앞으로 터질 기후 리스크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다 커버를 해서 회복력이 좀 강화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인데, 앞에 ‘현재’나 ‘미래’ 부분이 워낙 리스크나クライ시스 앞에 붙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사거나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으면 좀 적절하게 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이종배 위원**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다 보니 언뜻 듣기에 혼선도 오고 그러니까…… 이 법의 제목도 ‘기후위기 적응’이고 또 기후위험도 기후위기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에는 ‘이 법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정도로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후위험이 나오는 거니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지연 위원** 좋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에 서술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시고 서왕진 위원님은 기후위험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 안에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조지연 의원님 안에 기후위험이 34개 들어가고 김소희 의원님 안에도 31개 들어가고 나머지 2개 안에도 이게 핵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고 석탄발전소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기후위기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위험, 그로 인한 재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적응이라고 아마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을 완전히 다 새로 발의할 게 아니라고 하면 기후위험이라는 정의를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34개 조항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위험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4개 안에서 기후위험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들어갈 정도로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의 초반에도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을 동시에 언급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후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이 있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와 ‘미래’라는 단어 정도를 빼고 4개 안의 공통된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쟁점이 제기됐으니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조지연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조지연 위원** 아니요, 앞서 논의한 것에 중복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확실히 기후위기라는 것은 탄소중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차원인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정말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죽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기후위험을 저희가 최대한 최소화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는 있는

데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취지의 연장선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냈을 때 ‘예상 가능한’이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기후부랑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기후 위험 자체도 저희가 예상 가능하더라는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정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빼고 ‘현재의 기후위기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라는 그 조문으로 저희가 부처랑 조율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주신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예상 가능한’이라고 묶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발의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묶어 두기에는 이 법안이 담는 취지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통합의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예상 가능한’을 빼고 ‘현재’, ‘미래’ 빼고 정리하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김소희 위원 서왕진 위원님과 이소영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도 기후위기가 있고 미래에도 기후위기가 있고, 현재도 기후위험이 있고 미래에도 기후위험이 있으니까 ‘현재’, ‘미래’, 약간 수식하는 그 수식어를 빼고 ‘이 법은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현재’, ‘미래’를 빼는 것으로.

○李憲昇 위원 제가 한마디할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李憲昇 위원 이게 보면 발의자들 네 분 다 비슷한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 현재의 기후위기와 미래의 기후위험 이렇게 있으니까 ‘현재’ 빼 버리고 그냥 ‘기후위기와 기후위험’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현재’, ‘미래’ 빼 버리고. 현재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위험이.

○조지연 위원 예, 그래서 통합의견안에서 ‘현재의’, ‘미래’ 이것만 빼는 것으로 하면……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대강 의견이 모아진 것 같으니까요. 1조는 ‘현재의’와 ‘미래’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정리하셔야지요. ‘이 법은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소위원장 박지혜 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李憲昇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리고 앞서서 서왕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쟁점을 더 제기하셨는데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43조에서 45조 중에서 특히 물 관리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 위원님?

○서왕진 위원 세 가지 다인데요.

○소위원장 박지혜 세 가지 다?

○서왕진 위원 특히 물 관리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적응대책일 것 같은데 이관하지 않아도 되는가……

○소위원장 박지혜 왜 적응법으로 이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부분이라든지 녹색국토 관련된 부분은 기본법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미

티게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응법으로 전환, 이관하
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본법에 그냥 놔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 관리 부분은 적응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된 내용은 기본법에는 명시적으로 없습니다만 기본법 체계에서 상당히……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물 관리’라는 제하에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 수생태계, 물 절약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서 이 전체를 적응법 체계로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본법 체계로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
각으로 통합의견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후보험과 관련해 거듭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후보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통합의견으로 드렸던 것은, 106쪽의 통합의견으
로는 기후보험을 공공보험이라든지 또는 민간보험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을 활성화해야 된
다’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서 민간보험이건 공공보험이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지
원 조항으로 담아 놔서 이것을 공공보험만 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굳이 구분한다면 지불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
에도 민간 및 사적 보험에 대해서는 기후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
공공보험 영역에서는 지불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공공보험을 만들 수도 있고 일반 손해보험에서 민간보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총괄적으로 기후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을 통합
의견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공보험만 대상으로 한다, 민간보험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영역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정부 측에서 기후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
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법을 만들 때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차이는 말씀 주셨
던 것처럼 뭔가 액션을 넣어서 우리 사회가 다시 기후위거나 기후 리스크의 회복력을
강화하게 하는 데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냈던 법안들에 공통적으로 기후보
험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서왕진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잘 작동 안 하는 보험
들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이 이번에 폭염으로 야외 근로자들을
쉬게 하는데 그 근로자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쉬면 어쨌든 그 해당되는 급
여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쉬지 못해서 일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어서 부처는 쉬라고 하
는데 그 쉬지 못하는 비용을 누군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게 보험의 역할이라고 저희
는 생각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기후부랑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공공하고 민간하고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도 제주도가 기후보험을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다 그

런 뉴스가 있었던 것처럼 정부나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 여부랑 상관없이 뭔가 더 사회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넣은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왕진 위원** 보험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물 관리, 녹색 또 농림수산 전환 축진은 뭔가 부처 간에 무슨 다른 이상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감축 수단 이런 게 들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기존 기본법의 적응시책에 핵심 사안으로 다 나열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의견이 있어서 같이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후적응법에 들어가야 되는 국토나 농림·수산이나 이런 분야별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정안이 발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진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데, 지금 33페이지부터 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내용들이 죽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적응법을 심사하면서 타법 개정 방식으로 기본법의 여러 조항을 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기본법이 있는데 특별법이든 실행법이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자 발의하는 상황이면 기본법하구의 중복이나 이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통은 새로운 제정법과 기본법의 개정안을 같이 관련 법안으로 발의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법에서 어떤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빼는 것 자체가 숙고와 책임성이 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법에 대해서.

그런데 법안 발의 절차라는 게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의 도장을 받아서 책임성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심사보고, 검토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전문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부의요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숙의성을 보장하는 게 국회법의 기본적인 절차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정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안 발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국회법상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국회법상 발의를 거치지 않고 발의되지 않은 법을 심사할 수 있는 게 타법 개정이라는 방식인데 타법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원칙적으로 정말 경미한 사항, 문구 조정, 문구 몇 글자를 바꾸는데 그거와 관련된 법안의 문구를 같이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법안을 실제 발의하지 않고 다른 법안을 심사하면서 그 법을 손댈 수 있는 예외적인 그런 절차가 있지만 이거를 지금 33페이지부터……

물론 제가 이거 중복 아니냐고 몇 달 전에 그거를 제기한 것 때문에 기본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정부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발의자가 됐든 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단어 몇 개도 아니고 37조 2항 삭제, 3항 삭제, 37조의2는 작년에 이 특위에서 개정해 가지고 아직 시행도 안 된 조항인데 이것도 그냥 삭제, 38조 2항도 삭제.

이런 거를 타법 개정 방식으로, 기본법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법을 심사하면서 기본법을 이렇게 전부 다 수정하고 삭제, 삭제, 삭제,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몇 페이지에 달하는 기본법 내용을 삭제하고 이관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최소한 보지 못했고, 너무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는 정도로 제 의견을 밝히긴 하는데요. 국회가 그래도 이렇게 기본법을 수정하고 손대면서 이렇게 타법 개정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선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 이소영 위원께서 기본법과의 중복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부처랑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정법안에 뭐가 담길지는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놓은 다음에 기본법의 어떤 부분들을, 중복되는 부분들을 정리할 건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본법부터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놓고 제정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제정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법을 건드리신다는 그것 자체가 저는 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기록을 남기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원래 관련 법안 발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A라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B 법안을 심사하는 방식이 있어서 제가 그런 방식이 더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물 관리나 국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관할지 말지 여부가 이 법체계나 정책적인 판단의 내용인 거지요.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A라는 의원은 이관하지 않고 이것을 기본법에 남기는 게 의견일 수 있고 B라는 의원은 이것을 이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법안 발의라는 형태로 어떤 발제가 되고 그 발제에 대해서 A 의원, B 의원이 논쟁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법의 기본적인 법안 심사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거고요. 기후특위가 임시특위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심사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고 부의하는 데 있어서 부의요건을 맞추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법안심사권을 가진 특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유감의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소영 위원님 법체계는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기후적응법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적응법에 들어갈 사항이 기본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조정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정부나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검토를 해서 그게 기본법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님도 의견만 내시고 이거를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 이런 뜻은 아니시니까 의견만 기록하고 전문위원과 정부의 검토의견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소위원장 박지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서왕진 위원님이 43조~45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그 해당 조문을 읽어 보면 적응시책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해서 저도 정부가 남겨 놓자고 하는 의견에 동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어떨까요?

○서왕진 위원 그런데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 관리 관련해서 또는 농업 전환 관련해서, 녹색국토 관련해서 적응시책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남겨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이관 안 된다는 설명이 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적응대책 안에 그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리해서 그 내용을 담아낸단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적응까지를 포함한 자기 완결적인 완결법인데 충분한 재논의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리 이런 작업들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적응법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충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채로 그냥 우선 몇 가지만 이렇게 적응법에다 담는 식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적응의 주요시책이 탄소중립기본법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이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과정이 충실하게 돼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결과로서 중요하다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안에 있는 중요한 적응대책들 중에, 그것이 법에 통합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산수처럼 딱딱 떼어 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리해 내고 기본법에는 어떻게 남겨 두고 어떤 부분을 어느 수준으로 적응법으로 가져올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채로 지금 적응법을 사실상 똑딱딱딱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물 관리대책을, 적응시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법에 남겨 두고 적응법을 따로 만든다? 이거는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저희가 적응법 공청회를 할 때 애초에 기후위기적응센터도 한 15년~20년 정도 됐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 때 저희가 감축과 적응이라는 큰 두 가지의 틀을 다 담은 굉장히 좋은 기본법을 만들어서 솔직히 5년 전만 해도 적응법이 필요할까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실제로 공청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적응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적응대책을 더 치밀하게 잘 세워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면서 적응법에 대해 새롭게 제정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그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적응대책을 진짜 꼼꼼하게 잘 세우자. 기존에 적응대책 세웠던 것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copy & paste)가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적응대책을 잘 세우고 이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정부는 어떤 리스크 헷지의 방안을 선제적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이 적응법의 메인 목적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적응대책이 말씀 주셨던 43조부터 45조까지의 허술한 부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꼼꼼하게 볼 텐데, 43조부터 45조까지 수석위원님과 정부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적응법만큼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소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것은 또 별도의 법을 만들 정도로 또 다른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제정법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의미 부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정부 측 의견은요, 일단 현재 통합안에 기후위험이라는 정의조항이 있습니다. 갖고 계신 소위자료 21쪽 4호에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돼 있습니다.

기후위험 또는 기후위기라는 그런 정의조항을 갖고 이외에 기후위기 영향이라든지 취약성평가, 기후위험평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적응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척도를 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관련된 조항들이 또 통합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관되지 않는다고 해서 적응대책에 물환경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기후 적응대책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보면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면 이거는 기본법에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원래는 기후 적응시책으로서 이렇게 죽 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 적응시책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43조·44조·45조는? 기후 적응시책이 주요 핵심 부분일 텐데 유지하는 하는데 기후 적응은 다 빠진 기본법에다가 남겨 뒀을 때 어떤 장이나 어떤 범주로 남아서 역할을 하게 됩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적응시책이란 장을 저희가 삭제하는 게 아니고 제6장의 기후 적응시책이란 장은 유지가 되고요. 거기에 기후 적응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은 남겨 두는 형태로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왕진 위원 그것은 기본법상 기후 적응시책은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소희 위원 그대로 있습니다, 총칙에.

○서왕진 위원 너무 이상한 구조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본법에 일반적인 지침을 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기존에 배출권거래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례적인 체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소희 위원 의견 수렴이 된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도.....

○소위원장 박지혜 이 쟁점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실까요?

서왕진 위원님, 저희 그러면 이 쟁점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서왕진 위원** 저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동의할 수 없으시다는 것은 어떻게 대안을 제안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서왕진 위원** 저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적응법에 오히려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 내용에 있어서 적응대책을 넘어서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분해서라도 적응대책에, 적응법에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본법상의 가장 중요한 적응시책 중의 몇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적응법을 굳이 만든다고 하면서 적응법에는 담기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할 때 핵심 부분은 빼놓고 별도의 적응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서왕진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이 쟁점을 저희가 의견을 노트를 해 놓고요.

그러면 계속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혹시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셨으니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견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그리고 서왕진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페이지까지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듣고 심사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정의 조항 관련해서 23페이지의 8호, 25페이지 11호·12호는 정의 조항에 넣지 않고 개별 조항에서 다루기로 한다고 제안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51쪽 보고까지 듣고 오전 정회하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51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활용,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정보 연계·활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의 협력 등을 각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해서 제7조에서 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관련 주체는 정부로 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과 관련해서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는 4개 제정안을 모두 통합해서 제시를 하면서 다만 국가 기

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상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일부 수정하였고 그 내용을 뒤에서 통합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기후위험 평가입니다.

앞에 정의 조항에서 논의한 것처럼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을 구별해서 제정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험 평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관련 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제정안을 모두 합치면서 기후부가 예산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해서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1년 주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을 통합해서 제안하면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를 기본법에서 이관해서 규정을 할 때 별도의 센터를 중복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적응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통합해서 제안을 하면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적응정보의 생산 표준체계 설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정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6쪽부터는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8쪽에 있는 각 4개의 의원안에 중간에 밑줄 쳐진 부분 보시면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통합의견에서는 ‘분야별 영향’으로 분야별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쪽에 있는 각 제정안들의 7항 밑줄 부분에 있는 ‘매년’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통합의견에서는 매년을 삭제하였다는, 공개 주기를 삭제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까지 조문대비표는 제정안들의 내용을 가급적 통합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까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통합의견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지자체의 적응정보 자료제출 주기, 기후부의 결과 공개 주기는 예산상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자료 51쪽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적응정보 수집·관리를 협의체로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일원화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협의회로 일원화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위자료 52쪽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대상 1호~4호를 중복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분야별·지역별로 통일해서 업무는 간소화하더라도 충분하게 관련된 입법취지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위자료 54쪽의 국가기후위기정보센터 기능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로 지원 기구 명칭을 혼선이 없게 일원화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오전 소위 회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오시고 계신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위자료 7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60쪽의 ‘매년’을 삭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견이 있으신지 여쭙는데.

김소희 위원님, 따로……

○김소희 위원 저도 지금 정부의견(안)에 보면 IPCC 보고서의 주요 변경사항 반영 및 종합평가서 작성을 위해, 시차 등의 반영을 위해서 1년 주기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통합 관리하고 공개하는 통계정보가 그러면 주기는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을 삭제하는 대신 말씀 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시기를 못 맞추다 하면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야지 어쨌든 지자체든 정부든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니 통계자료에 대한 주기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부 측에 여쭙보고 싶습니다. ‘1년’을 삭제하는 대신에 ‘격년’이 됐든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제출 그다음에 결과 공개 주기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이란지 IPCC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마다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매년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

니다. 다만 주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이것은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하위법령에 담아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 그래도 주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법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자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기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뭐가 있어야지.

○김소희 위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종배 위원 정부에서는 몇 년이 적당하다고 그런 거예요?

○김소희 위원 그걸 아직 논의를 해야 돼서 시행령으로 하거나 근거 조항 정도로 담을……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시행령은 8항에 포괄적으로 공개 주거나 이런 것도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기적으로’라는 단어를 넣거나 아니면 공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을 넣거나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 측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김소희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기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근거를 남기자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김소희 위원 정부가 어쨌든 여기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주기를 몇 년으로 할지는 지금 논의가 필요하니 시행령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라서 ‘주기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근거를 남기면 주기는 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계자료가 매년이 좀 어려우면 격년이라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김소희 위원 예.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이것을 격년으로 정하면 또 격년으로 딱 박히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혹시 시행령을 정할 때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정보라도 그냥 일률적으로 다 격년이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수석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혹시 8항의 ‘공개’를 ‘공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공개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자료의 60쪽의 맨 끝에 하단에 보시면 다른 제정안 4건은 모두 ‘정보의 수집·생산 및 관리·활용 등’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의견에 ‘수집·생산, 관리·활용 및 공개’로 ‘공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런데 지금 논의되시는 게 공개에서도 공개 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개’를 ‘공개 주기’로 표현을 하고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8항이 전반적인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위임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기’라는 표현을 넣는다고 해도 다른 항에서 넣기보다 8항에

서, 위임하는 조항에서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서왕진 위원 이미 통합의견에 그렇게 반영돼 있다는 거네요?

○소위원장 박지혜 통합의견에는 ‘공개’까지 되어 있는데 ‘공개’를 ‘공개 주기’로 바꾸자는 말씀이시고.

61페이지 통합의견 문구에 ‘공개’, 밑줄 쳐 있는 부분을 ‘공개 주기’, 주기가 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별로 명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격년으로 정하는 것보다 혹시 정보의 특성에 따라 주기가 매년이 가능한 것은 매년 하고 격년이 가능한 것은 격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서왕진 위원 그렇다면 7항은 그대로 ‘공개할 수 있다’ 하고 8항에서 ‘공개 주기’라고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소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던 건데, 제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저희 모든 의원님들은 다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주기 부분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는데 ‘공개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를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서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위원님들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주기 부분이 아직 논의가 필요해서 정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뒤에 8항처럼 8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있으니까 ‘공개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어떠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수정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7항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다른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8항에 있어서는 ‘관리·활용 및 공개’라고 현재 문안에 돼 있습니다만 관리·활용 및 공개주기와 범위, 그러니까 주기·범위 또는 범위·주기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통합 관리하고 결과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지만, 그게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마 기타 국가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뿐만 아니라 범위, 공개의 내용…… 그러니까 범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공개주기와 범위를 같이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의견을 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에 공개가 잘 안돼 가지고 공개를 넣은 거고 이 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인데 여기다가 다시 또 범위라는 단서조항을 다시 가지고……

혹시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됐던 부분들이 개인정보의 이유라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기고 실제로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취약지역 관련해서는 집값의 문제랑 연결된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과의 그런 행태로 될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7항에서 공개를 하여야 된다는 일반적으로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조항, 그래서 아마 이전의 편의적인 발상은 적용…… 법 문안에서는 아마 의무화조항이 있기 때문에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요. 강한 공개의무를 부과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그에 맞춰서 앞으로 공개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릭트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께서 충분히 취지 말씀하셨고 차관님께서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취지로 그 시행령도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서왕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75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자료 75쪽입니다.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정안들이 기후부장관에게 기후위험지도 작성의무를 부여하면서 또 정부가 국가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제정안의 내용들을 모두 통합해서 제안을 하면서 기후부가 ‘기후위험지도 작성’을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으로 수정해서 지도 이외에도 시각화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76쪽은 관련 조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제정안별로 각각 기후부, 정부 또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평가하고 부문별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통합해서 제안하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통일적인 포괄지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개발의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통합의견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계획 전반에서 기후적응 전략과 요소를 반영하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및 점검·진단을 위한 법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해서 반영하면서 적응 주류화 평가 대상에 지자체의 행정계획이 포함되므로 주체를 정부와 지자체로 규정을 하고 정부업무평가 반영 요청 대상을 해

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명확하게 통합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제정안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사업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을 모두 통합해서 조문으로 반영을 하였는데 실태조사의 주체를 기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 통합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차지호 의원안에서 정부, 지자체, 취약기관에 각각 기후위기 적응대책 전반을 수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법에 있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이 곤란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기후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통합의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들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제정안들을 모두 통합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안을 하면서, 다만 광역협의회라는 명칭을 지방에 설치되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지방협의회로 수정했고 광역협의회 참여주체에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도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기후보험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기후보험 개발 지원과 보급 노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소희 의원안은 기후보험의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포함을 해 가지고 우선 통합의견에서 제안을 하면서, 관련된 보험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목적 외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할 때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일한 조항을 참고해서 35조에 벌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후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외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우선 통합수정의견으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산업의 육성과 또 그 밑에 보시면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등의 내용이 제정안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서 통합의견에 우선은 반영하여서 제안하였습니다.

85쪽부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는데, 우선 85쪽의 경우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인데 이것을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의 추진으로 조의 제명을 바꾸고, 예컨대 제정안들의 12조 1항 맨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기후

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의견에서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제정안들의 1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명을 주류화 촉진보다는 기후위기 적응의 확산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기후부와 협의를 통해서 제명을 기후위기 적응 확산으로 우선은 수정해서 제안을 했고 이 관련된 시행주체를 정부 또는 정부 및 지자체로 각각의 의원안들이 되어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지호 의원안 제17조에서, 기후위기 적응 책임관의 지정을 하는 내용이 17조로 되어 있는데 기본법에 있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후부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서 우선 통합의견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입니다.

맨 위에 제정안들의 18조 또는 17조에 있는 기후위기 적응 광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광역협의회의라는 명칭을 지방협의회로 맞춰서 그 밑에 조문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4쪽, 맨 위쪽에 보시면 통합의견에서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방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에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114쪽까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자료 75쪽, 오전에 배포하였던 정부안의 별지 3쪽 상단 제12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12조에 기후위험 공간정보와 저감사업의 추진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저감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영되는 안으로 정부안을, 통합의견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자료 77쪽, 별지 5페이지입니다.

기존에는 기후위기 적응지표, 적응성과 및 진척도 평가 등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적응지표·적응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기후위기 적응진척도 점검으로 의미를 축약하지만 명쾌하게 축약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자료 79쪽, 통합의견 제19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시행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한 통합의견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극한기후는 제2조(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통합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83쪽, 기후부가 별도로 배포한 별지에는 페이지 6쪽하고 7쪽입니다.

기후보험 종합 정보시스템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108쪽에 통합의견 제22조는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별도조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기후보험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에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후보험 관련 정보는 적응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조문은 별도로 두지 않고 기후보험 내 조문으로 이동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특별한 의견 없어요.

○김소희 위원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서왕진 위원님 의견 있으면……

○서왕진 위원 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정부 측에서 수정의견을 별도로 나눠 주셔 가지고 조금 헛갈려 가지고 여쭙보는데요.

통합의견, 자료 105페이지 21조가 기후보험인데요. 지금 이 조항에 정부 측은 4항, 5항을 넣자는 제안이신 거지요? 4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4항을 5항으로 바꾸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 뒤에, 그러면 108페이지에 있는 22조가 필요한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빼자고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걸 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삭제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15쪽입니다.

보칙 관련 사항들입니다.

먼저 기후위기적응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위기적응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각 관계부처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해 보이고 이를 통합의견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제정안들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의 보급, 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등 그다음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관련 조항으로서 제정안에 통합을 해서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포함하여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제정안들에 통합하여서 통합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근거 관련해서는 입법공청회 당시 이 관련된 사항이 논의된 것을 반영해서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1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조항들이 제정안들에 있는데 일반적인 위임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의견에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는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119쪽에 있는 제25조는 기후위기적응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통합의견으로 포함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의 의원님 안들 중에 보면 21조 또는 22조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의 보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122쪽 조지연 의원안 제22조로 보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등이 있는데 21조에 있는 지식의 보급과 22조에 있는 교육·홍보의 내용이 유사한 점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포함해 가지고 통합의견으로 122쪽의 제28조로 그 내용을 제안하면서 지식의 보급을 1항 안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보고드린 사항과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유사하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129쪽에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기후대응기금이나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그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33조를 통합의견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130쪽 맨 끝에 벌칙조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처벌규정을 참고해서 벌칙조항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통합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통합의견에 정부 동의합니다.

제5장의 명칭이 현재 보칙으로 제정안 돼 있습니다만 기후위기 적응정책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같은 경우에도 제6장에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보칙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별지의 3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소위자료 115쪽 기후위기적응정책협의회 및 82쪽 지방협의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적응대책과 동 협의체들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별지에 있는 3쪽부터 5쪽까지의 기후부 수정의견은 정책협의회는 제15조, 지방협의회는 제17조로 변경하고 조문의 위치를 제3장 적응대책으로 이동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

아울러 별지 4쪽부터 5쪽까지 기후부 수정안은 정책협의회 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무협의회 등 세부 내용을 추가해서 지방협의회는 광역시·도별로 두고 환경청장이나 유역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기후위기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 기본법에 있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하고 역할이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협의·심의’라고 돼 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갖고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요.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계획, 시행 심의·의결까지 하게 돼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적응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구요. 행정부 내 정책 협의·조정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결까지는 가지 않고, 의결기구 아니고 협의·조정기구로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부 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기후적응정책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규정을 했구요.

사실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변경·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민간위원과 함께, 기후대응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는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는. 다만 그 내용들은 기후위기정책협의회가 행정부 내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을 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 차이는 잘 이해했구요.

그러면 여기 적응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국가 적응계획도 세워질 거고 종합계획 또 시·도 계획 이런 게 만들어질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의결하는 체계는 기후대응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기후대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해서……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 내용을 갖고 기후대응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기본법에 뭔가 그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기본법에 관련 조항도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원래 기본법에 있는 것은 적응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기후대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서왕진 위원 그게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자동으로 거기로 올라가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기후적응대책,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거

친 내용들은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기후대응위원회.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李憲昇 위원** 특별한 의견 없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33조 재정 부분을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박지혜** 117페이지인데요. '현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포함 사업에서 운용되고 있는 예산·회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기후적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회계를 여기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33조를 만듬으로 인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용도에 기후위기적응사업을 따로 명시하거나 그런 계정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쪽에 계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지금 이 규정에 있는 것과 다른 논의로 이해가 되고요. 현행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의 재원이 우선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 명시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현재 기후위기적응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이 회계로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우선은 그것들을 명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33조를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추가로 계정을 설치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지혜**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자료 132쪽입니다.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해서는 제정안들이 공포 후 6월 또는 공포 후 1년 등으로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해소 문제인데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위 자료 앞에서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정안으로 전부 이관하고 일부 이관하고 일부는 존치하는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통합의견으로 제시를 하였는데 오전에 좀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법에 따라서 수립·시행 중인 계획 등이 이 법에 따라 이 법에 이관이 되거나 할 때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필요해서 그 경과조치를 부칙에 3조에서부터 쪽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뒤에 133쪽 조문대비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3쪽 맨 상단에 부칙 1조(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걸로 그다음에 제2조의 내용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해서 기본법에 있는 사항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우선은 타법 개정으로 해서 기본법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135쪽의 제3조부터는 경과조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3조부터 139쪽 9조까지 각각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서도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서왕진 위원님께서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법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기본법 체계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적응과 관련된 내용들 대부분 이 관을 해서 포괄적이고 총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은 기본법 체계로 그대로 놔두고 구체적으로 이행과 관련된 내용, 적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기후위기 적용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역할 분담하는 체계로 생각을 해서 일단 기본법하고 적용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통합 의견을 드렸습니다.

관련해 갖고 현재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현재 기본법에도 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배출권거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일부 중복된 조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배출권거래법에서 구체적으로 이행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녹색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된 법도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이행을 위한 녹색 클러스터법을 적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본법하고 그 이행을 위한 법률하고 명쾌하게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정 정도 최대한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을 마련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행 현재 기본법에 대해서는 특히 의견을 주셨던 기후위기 대응이나 물관리 부분, 녹색국토의 관리 부분,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에 관한 부분들을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그 적응에 관한 내용, 기타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항들을 그대로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떼어 내 갖고 적용법으로 이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일단 정의조항에 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께서도 갖고 있었던 우려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이런 물관리라든지 녹색국토 관리, 농림수산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포함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13조, 배포해 드렸던 정부 의견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은 현재 2항에 1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 통합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6호부터 8호를 신설을 해서 여기에 기본법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책 중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7호에 기본법 제44조제2항 녹색국토의 관리 시책 중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8호에 기본법 제45조제2항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중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녹색국토, 농림수산, 물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담아 놓을 경우에 그런 우려를 상당히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 수정의견안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제가 우려했던 문제의식을 어쨌든 기술적으로 잘 담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기본법에 남아 있는 기존 조항들,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 낼지 이런 작업들이 추후에 또 과제로 잘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사실 다소 기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반영하신 것 같아서 저는 문구를 보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더 좋은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지금 43조, 44조, 45조에 따라서 물관리나 녹색국토 관리나 농림수산 대책을 수립할 때 기후 적응 시책이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물론 재해 예방도 상당 부분 기후 적응 대책들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긴급히 복구하고 하는 그런 대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물그릇 자체를 크게 넓힌다든지 아니면 과거 통계라든가 최근 통계를 활용해서 아예 물관리 대책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린다든지 물길을 통합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이쪽에 사전에 예방·정비하는 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기존의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이 의도하는 바는 보통의 물관리 정책이나 녹색국토 정책이나 농수산과 관련한 정책을 세울 때도 이런 고려가, 기후 적응과 관련한 고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후부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서왕진 위원께서도 이렇게 조문을 만들더라도 기본법 조문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장님,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후 적응 대책을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기후 적응 대책에 물관리 부분에는 미래 기후 위험을 고려한 홍수·가뭄 대응에 대한 한 파트를 관련된 정책들을 담아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 부분에서는 기후위기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촌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일단 기후 적응 대책에 담아서 관련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시행일은 1년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것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고 계시는데 잠깐……

○**李憲昇** 위원 몇 명이 의결정족수입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가능하긴 한데 한 분이 지금 오고 계셔 가지고……

○**李憲昇** 위원 오시네.

○**소위원장 박지혜**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국조 참여하시고 이러느라고……

○**조지연** 위원 이주희 위원님, 역사적인 법안에 지금 동참하시는 거예요.

○**이주희** 위원 정말요? 죄송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만 이렇게 계시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기후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3항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4항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제5항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5건의 기후 적응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정의견 자료와 지금 추가로 주신 13조 적응대책에 관한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지연** 위원 저 할 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지연** 위원 사실 이제 기후특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데다가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오늘 아마 사실상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박지혜 위원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李憲昇** 위원 저도요.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차관님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조지연** 위원 차관님, 그간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다른 법안보다 이 적응법 하실 때 많은 직원분들이 뒤에서 정말 서포트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의원실마다 찾아오셔서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가지고 법안심사소위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차관님께도 감사드리지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감사합니다.

저희 이 마음으로 기후특위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기후노동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서왕진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이현승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그리고 이주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성희 김소희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주희 이현승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입시회의록